- 대한산업안전협회 시설안전본부 주요사업안내
- ·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-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
- · 건설기술진흥법
-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
- 거초법
- 유지관리 정기점검
- · 법적 외 자율안전진단
- 내진성능평가, 사전·사후진단, 진동·소음측정, 하중변경등으로 인한 구조안전진단, 지반안전성검토, 사면 및 옹벽 진단,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점검

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1. 3F 대한산업안전협회

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]

#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안내



## **② 대한산업안전협회**

문의전화 | 서울·경기·강원/02)860-4708

광주 · 전라 / 070)4909-0180

부산 · 경남 / 051)804-2096

대전・충청 / 042)628-2160

대구·경북/053)745-3151

제 주 지 역 / 070)7720-2588

#### • 제3종시설물이란

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 (교량·터널 등)의 구조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#### • 관련법규

시설물안전법 제6조 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)

시설물안전법 제8조 (제3종시설물의 지정등)

시설물안전법 제11조 (안전점검의 실시)

시설물안전법 제12조 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45호)

#### •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절차



지정 전 실태 조사

[지정기관] ※ 지침 제100조 및 별표32 참고



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시설물정보 입력

[지정기관] ※ 지침 제101조 참조



제3종 시설물 지정통보 및 고시

 $\blacktriangledown$ 

[지정기관] ※ 지침 제102조 참조



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[지정기관] \* 지침제102조참조

**시설물관리계획 제출** [관리주체] ※ 법제6조참고



정기안전점검결과 제출

[관리주체] ※ 법제11~13조, 제17조 참조



유지관리결과제출

[관리주체] ※ 법제11~13조, 제17조 참조

### • 제3종시설물의 실시시기

안전등급	A·B·C등급	D·E등급
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이상	1년에 3회 이상

※필요시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점검 실시

### •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

구 분	대 상 범 위	
공동주택	O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<b>5층 이상</b> ∼ 15 층 이하 <b>아파트</b> O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<b>연면적 660㎡초과,</b> 4층 이하 <b>연립주택</b>	
공동주택 외 건축물	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<b>연면적 1,000㎡ 이상</b> ~5,000㎡ 미만의 <b>판매시설, 숙박시설,</b> 운수시설, <b>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</b>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	
	○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<b>500㎡ 이상</b> ~1,000㎡ 미만의 <b>문화 및 집회시설</b> 중 <b>공연장 및</b> <b>집회장,</b> 종교시설, 운동시설	
	${ m o}$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㎡ 이상 $\sim$ 1,000㎡ 미만의 위락시설 , 관광휴게시설	
	o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<b>11층 이상</b> ∼16층 미만 또는 <b>연면적 5,000㎡ 이상</b> ∼30,000㎡ 미만의 <b>건축물</b>	
	O 5,000 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	
	o 준공 후 15 년이 경과된 <b>연면적 1,000㎡이상의 공공청사</b>	
교량	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 「도로법」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	
터널	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, 시도 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어촌도로의 터널 - 법 1,2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	
육교	O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	
지하차도	O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	
기타	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·교량·터널·항만·댐 등 구조물과 그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	

#### 비고

- 1.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.
- 2.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.
- 3.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.
- 4. 노유자 시설 중 단독 · 공동주택,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.
- 5.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(건축물 용도)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.
- 6.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- 7.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
- 8.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.